

사단법인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이하 “협회” 라 한다)라 하고, 영문명은 “Korea Community Enterprise Central Association” (KCECA)로 한다.(2018.11.22. 개정)

제2조(목적) 본 협회는 회원 상호간의 협력 증진 정보교환을 통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상호이익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이룩 함으로써, 마을기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둔다. 단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경우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2018.11.22. 개정)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마을기업에 관한 각종 조사, 개발, 정책 연구 사업
2. 마을기업 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
3.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교육 및 컨설팅 사업
4. 마을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공동 판매, 농·수·축산업도·소매, 유통사업
5. 마을기업에 관한 각종 홍보 및 출판, 인쇄사업
6. 마을기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지원·육성사업
7.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연대 협력, 소프트웨어 자문 및 개발공급사업
8. 마을기업 박람회, 사진전, 미술대전 등 이벤트 사업
9. 그 밖에 마을기업 활성화 등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수익사업) 협회는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 목적과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본 협회의 목적 사업에 사용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단체나 개인으로 한다.

②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이 발생한다.

제7조(회원의 구분) ①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 한다.

② 일반회원은 주무관청이 지정한 마을기업 중에서 제6조의 자격을 갖춘 단체이다.

③ 특별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며 제6조의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개인이다.

1. 정관 제4조에 준하는 목적 사업을 정관에 명시한 단체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업 실적이 인정되는 단체
2. 협회의 목적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성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

제8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을 갖는다.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협회의 정관을 포함한 각종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각종 부담금의 납부

② 제1항 3호의 회비 및 각종 부담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약을 만들어 운영한다.

제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상벌) ① 회원이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협회의 명예 또는 회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협회의 사업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일반회원이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해 마을기업 자격이 상실된 경우
3.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회원의 상벌은 이사회가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④ 협회는 징계 절차에서 징계 대상자의 소명권 및 재심신청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수석부회장 : 1명
3. 부회장 : 약간명
4. 이 사 : 5명 이상 25명 이내(2018.11.22. 개정)
5. 감 사 : 2명

제13조(임원의 선임과 자격)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이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원 또는 특별회원인 단체의 법률적 대표

2. 특별회원 중 개인회원으로서 이사회에 추천을 받은 사람

- ③ 감사 중 1인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선출한다.

제14조(임원의 선임제한) ①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이사와 위 ①항의 법률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와 보선) ① 임원의 임기는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② 선출직 임원의 궐위로 인한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로 하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당연직 이사가 궐위된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가진 후임자가 임원직을 승계한다.

- ④ 초대 임원은 협회 창립총회 개최와 동시에 임기를 시작한다.

제16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협회의 재산 상황 감사 및 목적 사업의 집행 상황에 대한 감사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회장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항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회장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8조(임원의 대우 및 보수) 비상근 임원과 감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고, 임원인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임원의 취임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9. 그 밖에 다른 관계 법령에 따라 협회의 임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
제20조(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협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제4장 조 직

제1절 총회

제21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전자매체 포함)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총회의 책임과 권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협회 사업 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협회 사업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6. 기본 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차입에 관한 사항

7. 회원 제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이 따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단, 회의는 사본으로 진행가능하며 원본은 추후에 비치 하도록 한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의결 제척사유)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 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절 이사회

제26조(이사회 위상과 구성) 이사회는 협회 임원으로 구성되며 협회의 최고 운영기구로서 협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

제27조(이사회 개최와 운영) ① 정기 이사회는 매 분기별 1회 개최한다.

② 임시 이사회 소집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회장은 이사회 소집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집 공고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감사의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

③ 이사회는 회의 개최 예정일 7일전까지 서면(전자매체 포함)으로 소집·공고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협회 회장,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및 감사가 서명·날인 한다.

제28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6. 협회 운영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7. 시·도지부 승인에 관한 사항
8. 각종 위원회 및 부설기관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절 사무국

제30조(사무국의 설치와 운영)① 협회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

- ② 사무국은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절 17개 광역시·도 지부

제31조(17개 광역시·도 지부의 설치와 운영) ① 협회의 원활한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광역 단위 행정 구역별로 1개의 시·도지부를 설치·운영한다.

- ② 17개 광역시·도지부는 총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승인하며, 이에 따라 설치·운영된다.
- ③ 광역시·도지부는 다음과 같다
 - 인천지부 : 인천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제물포스마트타운 1302호
 - 경기도지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610번길 21(야탑동) 1층
 - 대전지부 : 대전시 중구 보문로 293 대전사회적경제 협동의 집 3층
 - 충남지부 : 충남 예산군 광시동로 136
 - 충북지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리 560번지
 - 광주지부 : 광주시 북구 설죽로 455번길 18-11, 2층
 - 전북지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학전길 11
 - 전남지부 : 추가(2021.02.25. 개정)

- 제주지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상하로 15번길 5
- 대구지부 : 대구시 달서구 상원로 13길(18) 상인동 대구마을기업협회
- 경북지부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로 238번길 2
- 강원지부 :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포도마을길 31
- 울산지부 : 울산시 동구 남목 15길 31-8
- 경남지부 : 경남 합천군 쌍백면 묵골 2길 43

제32조(17개 광역시·도 지부의 책임과 권한) ① 17개 광역시·도 지부의 설치·조직과 재정 및 운영은 협회 정관과 총회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다.

② 17개 광역시·도 지부는 해당 지역 내에 소재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의 가입신청을 심의하여 이사회에 추천한다.

제33조(17개 광역시·도 지부의 구성과 운영) ① 17개 광역시·도 지부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모든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17개 광역시·도 지부는 협회 제13조(임원의 선임과 자격) 기준을 준용하여 1인의 대표를 선출한다.(2021.02.25. 개정)

④ 17개 광역시·도 지부는 해당 행정구역 내에 시·도 지부와 사무국을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⑤ 17개 광역시·도 지부는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개정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절 위원회 등

제34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① 총회는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5조(자문기관 선정) ① 총회는 협회의 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자문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의 선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재산과 회계

제36조(재산)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목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설립 당시에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정부,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여 또는 기부 받은 현금, 토지, 건물 등(다만,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부적합하다고 의결한 재산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운영재산은 협회가 출연한 기본재산 중 제2항에 따른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제37조(재산의 관리) ① 협회가 기본재산을 매매·증여·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와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의 유지·보존 및 그 밖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8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협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부자에 의한 출연금 및 기부금
3. 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4. 수익 사업 및 모금 사업을 통한 기금
5. 전년도 이월금
6. 그 밖의 수익금

제39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0조(결산)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회계 및 업무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 및 업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업무보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와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6장 정관 변경과 해산 등

제43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해산) 협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해산 등기 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청산 및 잔여재산 처분) ① 청산의 경우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회장이 맡고, 회장이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청산 후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2021.02.25. 개정)

제46조(공고 및 방법) ① 법령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및 중앙일간지 등에 공고한다.

②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2021.02.25. 개정)

제47조(준용 규정)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협회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운영규정) 본 협회가 정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운영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또는 서명)한다.

부 칙(2018년 12월 28일)

제 1조(시행) 본 정관개정안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본 정관개정안의 승인을 위한 임시총회를 이사회 의결을 통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